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4호 2016. 9. 19. (월요일)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10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03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6-10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김동\*)..... 5
- 하동군 고시 제2016-1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신점\*)..... 6
- 하동군 고시 제2016-109호 재해위험저수지 고시공고..... 7
- 하동군 고시 제2016-1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김성\*)..... 9
- 하동군 고시 제2016-11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04차)..... 10
- 하동군 고시 제2016-11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심무\* 외 1명)..... 13
- 하동군 고시 제2016-11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이갑\*)..... 14
- 하동군 고시 제2016-12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05차)..... 15

##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866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하동군 공고 제2016-867호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
- 하동군 공고 제2016-869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하동군 공고 제2016-876호 하동군 최첨관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 하동군 공고 제2016-877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879호 지적재조사 서당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58
- 하동군 공고 제2016-90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60
- 하동군 공고 제2016-904호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61

회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03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11.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81 외 24 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8.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3 ) 제 464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840-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81	20160811	20070618	산복도로의 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558-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24	20160811	20070618	관곡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강변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572-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93-14	20160811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8, 19-2, 1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81-14	20160811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 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653-1, 652-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13	20160811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 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52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상고개로 230	20160811	20070618	양보면박달리에서진교면월운 리경계에있는 재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32-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85-6	20160811	2007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8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34-8	20160811	20070618	소재라는 옛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방식의 두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77-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77-8	20160811	20070618	사철기후가 온화하여 꽃이 피므로 동리 입구에 있는 정자 주위에 언제든지 꽃이 피어있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77-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77-6	20110729	20070618	사철기후가 온화하여 꽃이 피므로 동리 입구에 있는 정자 주위에 언제든지 꽃이 피어있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57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54	20160811	20070618	고이라는 법정리명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4-3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6	20160811	2007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 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 부여	

## 하 동 군 공 보

### ( 4 ) 제 464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063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1길 70	20160811	2007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1-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1-3	20160811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 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1-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1-1	20160512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 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산28-1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상고개로 603	20160811	20070618	양보면 박달리에서 진교면 월운리 경계에 있는 재이름 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리 162-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273-15	20160811	20070618	부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39-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안길 53	20160811	20080402	옛날부터 전해온 이름 청룡 안길의 줄임말로 청안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43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계길 63	20160811	20090302	옥산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흘러가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6-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800	20160811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0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06	20160811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0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04	20110729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63-14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63-16	20160811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63-14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63-14	20111026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8-1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2-3	20160811	20110621	하동청년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명을 청년회관길로 명명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10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김동렬	주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들물길 17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479-2(구)		
	면적	77.0㎡		
	기간	2016.8.12. ~ 2021.8.11.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 하 동 군 공 보

( 6 ) 제 464 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10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신점임	주소	경남 하동군 횡천면 청학로 404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918(구)		
	면적	4.0㎡		
	기간	2016.8.12. ~ 2021.8.11.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16-109호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 하 동 군 수

###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내용

저수지 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구역면적 (㎡)	총저수량 (㎡)	체당고 (m)			
화정독 골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640-1 일원	760,000	9,250	8.0	하동 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하락골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637 일원	150,000	30,660	15.0	하동 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감나무 골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27 일원	300,000	11,100	9.0	하동 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건설교통과)

###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장기사용에 따른 제체 누수 및 상류사면 침식, 댐마루 요철, 하류사면 침하 등의 손상이 발견되어 시설물 안전도 저하, 홍수대응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하 동 군 공 보

( 8 ) 제 464 호

###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6. 08. 16.

### 6. 문의처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14)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110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김성애	주소	부산시 북구 의성로 127번길 한성 맨션 3동 305호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1366(구)		
	면적	34.0㎡		
	기간	2016.8.26. ~ 2021.8.25.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04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6.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51-20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11 ) 제 464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부계2길 71-8	20160826	20070618	오리가 많이 살았던 골짜기 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53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기길 6-73	20160826	20070618	시루봉 남쪽에 있는 중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04-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100-1	20160826	20070618	산등성이에 용이 산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532-1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11-15	20160826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 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 로 51-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 로 51-2	20160826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 로 51-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 로 51-4	20110729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51-1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51-18	20110729	20070618	산등성이에 용이 산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51-1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51-20	20160826	20070618	산등성이에 용이 산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195-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73	20160826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0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01	20110729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 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0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01-1	20160826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 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16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964	20160826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 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 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 하 동 군 공 보

( 12 ) 제 464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711-5, 914-7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394	20160826	20070619	금성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13-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서근속등길 15-3	20160826	20080402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809-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계길 207-52	20160826	20090302	옥산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흘러가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산56-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917-63	20160826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11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심무재, 박경애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382 센 텀피오레APT 106동 2301호
공사(점용 ·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866(구)		
	면적	10.0㎡		
	기간	2016.9.7. ~ 2021.9.6.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464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119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이갑수	주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길 9-2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384(구)		
	면적	282.0㎡		
	기간	2016.9.8. ~ 2021.9.7.		
	목적	매실나무 재배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6-120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05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9.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7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9.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464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510-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143-28	20160909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 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9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58-69	20160909	20070618	신흥이라는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1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31	20160909	2007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481-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반석길 80-7	20160909	20070618	마을의 생긴 모습이 복치형 국의 명지라 하여 평이 없드 러 있는 모양이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239, 238-1, 238-2	경상남도 하동군하 동읍군청로105-16 (하동역사)	20160909	2007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 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하동역 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9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길 10	20160909	20070618	새로생긴길이고시장과인접하 기때문에 진교시장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150, 산59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성길 108-43	20160909	20080402	우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산 69-1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상촌길 68-162	20160909	20080402	청룡과 상촌을 합성하여 청룡상촌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86-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36	20160909	20090302	옛날 종이를 생산하던 마을 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25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7	20160909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376-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6-6	20160909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천리 522-5, 522-4	경상남도 하동군북 천면경서대로2347 (북천역사)	20160909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북천역 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525-1, 526-1	경상남도 하동군횡 천면경서대로 998-12 (횡천역사)	20160909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횡천역 사



하동군 공고 제 2016-866호

##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6.1.15)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 (안 제2조제2항)
  - 나.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 (안 제3조제2항)
  - 다.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개정 (안 제4조제1항)
  -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 개정 (안 제11조)
  - 마.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개정 (안 제12조)

하 동 군 공 보

( 18 ) 제 464 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055-880-2283, FAX 055-880-2279, e-mail sss6673@korea.kr)에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에 따른 대학”을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로, “중에 있는 자”를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를 “「건설기술 진흥법」에”로, “관계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  
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를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사 또는 자문대상”을 “심의”로, “심의 또는 자  
문”을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각각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  
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심의위원회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심의결과”로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464 호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문결과의”를 “심의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하동군의 본청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u>중에 있는 자</u></p> <p>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u>자로서</u>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u>풍부한 자</u></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u>추천하는 자</u></p> <p>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u>관계법령</u>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 -재직 중인 사람</p> <p>2. ----- <u>사람으로서</u> ----- ----- -<u>풍부한 사람</u></p> <p>3. ----- ----- -----<u>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u></p> <p>4. 「건설기술 <u>진흥법</u>」에 ----- ----- ----- <u>관련 법령</u>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5. <u>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u></p> <p>6. <u>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u></p>	<p>5.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u>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u></p> <p>6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 풍부한 사람</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 또는 직위로 한다.</u></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p>	<p>제4조(기능) ① ----- -----.</p> <p>1. <u>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u></p> <p>가. <u>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p> <p>나. <u>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p> <p>다. <u>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u>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	<삭 제>
3. <u>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u>	<삭 제>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영 제25조 제4호 카목의 학술 <u>연구용역계약에 관한 사항</u>	<삭 제>
6. (생 략)	3.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u>	<삭 제>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 <u>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u>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u>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u>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 한 사항을 <u>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u>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 집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 <u>심의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u>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u>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u>심의 또는</u> <u>자문에 참석하게</u>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u>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안</u> <u>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위</u> <u>원회에 참석하게</u>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서 정한 사항에 대한 <u>심의 또는 자 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심의 또는 자문</u>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6조(소위원회) ① ----- ----- 심의를 ---- ----- ----- <u>심의</u> ----- ----- -----,</p>
<p>② ~ ⑧ (생략)</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 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u>심의 또는 자문요청서</u> 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u>심의 또는 자문을</u> 요청하여야 한다.</p>	<p>제7조(심의요청 등) ----- ----- <u>심을</u> ----- ----- <u>심의요청서</u> ---- ----- ----- <u>심을</u> -----,</p>
<p>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p>	<p>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p>
<p>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u>심의 또는 자문요청서</u>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① ----- <u>심의요청 서</u> ----- -----,</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u>심의 또는 자문회 의를</u>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u>심의 또는 자문기간</u>을 7일 이내 1회에 한정 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② ----- ----- ----- <u>심의위원회</u> ----- ----- ----- ----- <u>심의위원회 기간</u>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u>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u>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 <u>심의결과</u> ----- ----- -----,</p>
<p>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위하여 필요할 때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청취 등)----- ----- ----- <u>심을</u> ----- ----- ----- ----- ----- ----- -----,</p>
<p>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생략)</p>	<p>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8조제3항에 따른 <u>자문결과의</u>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p>	<p>② ----- <u>심의결과</u> ----- ----- ----- -----,</p>
<p>③ (생략)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u>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p> <p>2. <u>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u></p> <p>3. <u>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u></p> <p>4. <u>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p> <p>제12조(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p> <p>1. ~ 8. (생략)</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제12조(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9. (생략)</p>	<p>9. <u>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하동군 공고 제 2016-866호

##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임금지불약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
  - 나.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사항 삭제 (안 제5조)
  - 다. 실적평가 및 게시 사항 개정 (안 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재정관리과, 전화 055-880-2283, FAX 055-880-2279, e-mail sss6673@korea.kr)에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서식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를 “(대가지급 사전 통지)”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실적평가 및 게시)”를 “(실적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p> <p>① (생략)</p> <p>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부 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현행 제1항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실적평가) ① ----- ----- ----- ----- -----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6-869호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안 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신청, 교부, 정산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
  - 가구별지원사업 대상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용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함.
3. 주요 내용
  -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 기금의 지원신청 방법 규정(안 제2조)
  - 기금의 교부방법 규정(안 제3조)
  - 사업계획의 변경방법 규정(안 제4조)
  - 기금의 정산 및 보고방법 규정(안 제5조)
  - 가구별지원사업의 전용카드제 규정(안 제6조)
  - 지원의 취소 규정(안 제7조)

## 하 동 군 공 보

( 34 ) 제 464 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6년 9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880-2584, FAX 880-2569, e-mail disk22@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형태의 지원 또는 가 구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 수렴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 이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의 필요 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7조의 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교부) ① 공동 지원사업이 확정된 마을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 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공동 지원사업 기금을 교부받은 주민지원협의 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내용
3. 사업비의 증·감
4. 사업장소·사업기간·사업시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된 사업계획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을 붙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공동 지원사업을 완료한 마을회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사업 정산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2. 지출 증빙서류

**제6조(전용카드의 사용)** ① 군수는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하동군과 협약한 제휴 금융사의 주민지원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 연계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발급받은 전용카드의 잔액 한도에서 사업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용제한 업종의 사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하여 군수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용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일괄 환수한다.

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에 한정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가구별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전용카드 집행 관리)** ① 군수는 제휴 금융사에서 구축한 전용카드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상자 등록 등 집행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용카드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한다.

1. 자동이체 및 한도대출의 모계좌 등록
2. ATM입지급거래, 인터넷뱅킹·텔레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3. 양도 및 양수
4. 명의변경. 단, 상속 및 개명에 의한 경우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5. 계좌의 변경과 해지
6.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7. 이자의 발생

② 가구별 지원사업은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의 사용실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또는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5.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 한 경우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한 업종(제6조제2항 관련)

■ 전용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245개 업종)

여행(9)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기타교통수단, 항공사, 관광여행, 렌터카
레저업소(8)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스키장, 종합레저타운, 당구장, 기타레저업소
가구(3)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주방기구(4)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광학제품(3)	카메라, DP&E, 기타광학제품
유통업비영(5)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구내매점(국가기관 등), 기타비영리유통
직물(5)	옷감·직물, 카페트·커튼·천막·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서적문구(9)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및인쇄물, 교육용테이프판매,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사무통신(6)	컴퓨터, 사무용OA기기, 통신기기, 통신기기(무이자할부),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품
병·의원(8)	종합병원, 병원(응급실운영), 병원(응급실미운영),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위생(6)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미용재료, 의료용품
음료식품·건강식품(8)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물,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품
용역서비스(20)	종합용역, 가레서비스업, 보관및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정보서비스, 공공요금대행 서비스/소득공제비대상, 공공요금대행서비스/소득공제비대상, 통신서비스/소득공제비대상, 통신서비스/소득공제대상, CATV, 이동통신요금, 위성방송, 기타용역서비스, 조세서비스, 조세서비스(특약), 법률회계서비스(개인), 부동산중개·임대, 소프트웨어, 법률회계서비스(법인)
회원제업소(3)	사무서비스, 서적, 학원
레저용품(5)	스포츠·레저용품, 기타음반제품, DVD·음반·테이프판매, 악기점, 피아노대리점
문화·취미(10)	민예공예품, 수족관, 화원, 영화관, 티켓(문화관람권), 문화취미기타, 골동품점, 화랑, 화방·표구점, 애완동물
전기제품(3)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연료판매점(12)	주유소, LPG취급점,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15)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장, 복지매장, 기타유통업, 면세점, 농축수산가공품, 통신판매업1, CATV홈쇼핑, 통신판매업2, 인터넷P/G, 인터넷종합물, 인터넷물
의류(11)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 와의셔츠·타이, 캐주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 하 동 군 공 보

( 40 ) 제 464 호

신변잡화(7)	가방, 제화, 신발, 기타잡화, 시계, 액세서리, 기념품점
학원(13)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계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유학원, 기타교육기관
자동차정비 •유지(11)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약국•기타 의료기관(8)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 료기기
일반•휴게 음식(8)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건축자재(9)	보일러•펌프•샷시, 건축용요업제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전문, 부동산분양, 기타건축자재
수리서비스(6)	레저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기타(5)	농기계, 비료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기계공구, 비영리/비대상
숙박업(5)	특급호텔, 1급호텔, 2급호텔, 콘도, 여관/기타숙박업
회원제•무인 판매(6)	레저업소, 자동차서비스, 건강식품, 일반자판기, 담배자판기, 공공자판기
자동차판매(6)	국산신차판매, 중고자동차판매, 수입자동차, 이륜차판매, 중고자동차위탁판매, 기타운송
보험(3)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보험
기 타(5)	비영리/대상, 외국인전용가맹점, 기타전문점, 생활서비스(통신판매), 일반(통신판매) 등

### ■ 전용 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23개 업종)

레저용품(2)	골프용품전문점, 총포류판매점
신변잡화(2)	귀금속, 성인용품점
보건위생(4)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음료식품, 건강식품(1)	주류판매점
레저업소(4)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노래방
유통업영리 (6)	일반백화점, 자사카드발행백화점, 상품권, 상품권전문판매, 전자상거래상품권, 전자상거래 상품권전문판매
일반휴게음식, 유흥단란(4)	각데일바,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신청서**

대표자(단체명)	(남/여)	법인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목적				
사업내용				
총사업비 (천 원)	계	기금	주민부담	기타
사업장소				
사업기간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읍·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인)

○○읍·면 ○○마을 이장 ○○○ (인)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

- 붙임서류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 1부.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1부.

하 동 군 공 보

( 42 ) 제 464 호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총괄표

(단위 : 건/천원)

마을명	합계		공동지원사업										가구별지원사업		비고	
			소계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기타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계																

○○년도 ○○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공동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역

(단위 : 건/천원)

사업구분	마을명 (대표자)	법인 등록 번호 (생년 월일)	주소	연락 처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총사업비				사업 장소	사업 기간	(인)
							계	기금	주민 부담	기타			
계													

※ 사업구분 :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기타로 구분

○○년도 ○○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가구별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역

(단위 : 건/천원)

마을명	세대주실명 (카드발급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내용	지급요청액	(인)
계							

※ Excel 서식으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기금 교부신청서

기금사업명				
기금사업자	성 명	(남/여)	명칭·주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총사업비 (원)	계	교부신청액	주민부담액	기타
사업장소				
사업기간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교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 동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하 동 군 공 보

( 44 ) 제 464 호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주 사업 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천원(기금 :            , 주민부담 :            )

2. 자산 및 부채현황(단체의 경우에 한함)

구 분	자 산(천원)			부 채(천원)	비 고
	합 계	동 산	부 동 산		
합 계					

3. 기금사업 수행계획

○ 세부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기금 집행계획

사업내용(단위사업)	예산과목	금액	산출내역(기초)
계			

○ 주민부담 예산 집행계획

사업내용(단위사업)	예산과목	금액	산출내역(기초)
계			

4. 사업비 산출 기초

구 분	소 요 액(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기금	주민부담		
합 계					

5. 주민부담액 부담 방법

보조사업자		주민부담액(원)	주민부담방법
주 소	성 명		

6. 기금사업의 효과

7. 기금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주민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 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내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 계			

8. 기타

○ 실무책임자 : 직 위 , 성 명 :  
 ○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별지 제6호 서식]

### 기 금 사 업 정 산 보 고 서

1. 기금사업명 :

2. 기금사업자

가. 명칭·주소 :

나. 성 명 : (남/여)

3. 기금사업의 목적 및 내용

○

4. 기금 예산 집행내역

구 분	합 계(원)	기금	주민부담액	비고
총사업비				
교 부 액				기 금
집 행 액				총사업비기준
잔 액				
이자발생액				
반 납 액				기금잔액+ 기금이자

4. 기금사업기간 :

위와 같이 기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첨 부 1. 사업실적보고서 1부.  
 2. 각 증빙서류 1부. 끝.

20. . .

기금사업자 (인)

하 동 군 수 귀하

( 48 ) 제 464 호

[별지 제7호 서식]

##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업추진 결과

가. 사업개요

○

나. 사업실적

○

2. 사업성과 및 문제점

가. 사업실시 성과분석

○

나. 사업추진상 문제점

○

3. 건의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

4.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항 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금액	세부내역	
합 계				

※ 지출증빙서류 별첨 :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사진대장 등 지출 관련 서류



하동군 공고 제2016 - 876호

###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의거 남중권 9개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 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내용
  - 남중권 지역민(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일 경우 입장료 50% 감면 사항 추가(안 제7조 별표 1)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9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 055-880-2384, FAX 055-880-2369)에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 50 ) 제 464 호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입 장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 통합권 :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 입장료 50% 감면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u>입 장 료</u> (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 <u>입 장 료</u> (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개별권 : 최참관택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관택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개별권 : 최참관택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관택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입장료 50% 감면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하동군 공고 제2016 - 877호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6년 8월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안 이유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의거 남중권 9개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내용
  - 남중권 지역민(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일 경우 관람료 50% 감경 사항 추가(안 제8조 별표)

하 동 군 공 보

( 54 ) 제 464 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9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055-880-2384, FAX 055-880-2369)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 56 ) 제 464 호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 ※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택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 관람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3" style="width: 20%;">구 분</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요 금</th>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개별권</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통합권</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개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체 (20명 이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체 (2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td> </tr> <tr> <td>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택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p>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3" style="width: 20%;">구 분</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요 금</th>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개별권</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통합권</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개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체 (20명 이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체 (2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td> </tr> <tr> <td>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택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관람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p>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600	4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2,600	2,000																																																					

하동군 공고 제 2016 - 879호

## 지적재조사 서당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하동군 적량면 서당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610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2016. 8. 17. ~ 2016. 9. 19.(33일간)
4.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5.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하동군청 민원과

나. 전 화 : 055-880-2083

다. 팩 스 : 055-880-2078

라. 우 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

<b>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b>				
① 사업명				
② 사업지구위치				
③ 시행자				
④ 의견제출자	성명 및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⑤ 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span>제 출 자</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p><b>하동군수</b> 귀하</p>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하 동 군 공 보

( 60 ) 제 464 호

하동군 공고 제 2016 - 900호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8월 30일

## 하 동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행정처분 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유통 주점	그린룸	강☆애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34	관할세무서 폐업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허가 취소 (2016.8.30)

4. 공고기간 : 2016. 08. 30 ~ 2016. 09. 19(20일간)
5. 고지사항 : 영업허가 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부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2352)

하동군공고 제2016 - 904호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 2016년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6년 9월 2일 ~ 9월 30일
- 장 소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sup>2</sup>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6년 9월 2일 ~ 9월 3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122~6)

2016년 9월 2일

# 하 동 군 수